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절 이용대상

제102조 (입소정원) 시설의 정원은 34명으로 한다.

제103조 (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제2절 모집방법

제104조 (모집방법)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 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내에서 입소전화 상담 및 기관 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홍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 모집 한다.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5조 (계약기간) 입소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07조 (입소비용, 월이용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 그리고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급여부분의 상세 내역은 본 규정 제107조에 명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본규정 별표1의 도표1과 도표2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상기 입소비용 관련 자료는 매년 변경되는 급여수가 결정되면 운영규정의 개정없이 별표1~4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한다.

●별표1~4: 수급대상자 입소비용 상세내역 참조

제108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기타 비용부담액)

1. 비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비용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납부해야 한다.

제10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1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8.정서지원 서비스: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113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
3.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114조 (급식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에게 계절에 알맞은 급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시 촉탁의 처방에 의한 특정 환자식이나 개별 식을 제공하여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 등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식단은 보건소 또는 영양사가 제공한 식단표를 이용 한다

제115조 (일상생활지원서비스)

1. 시설은 모든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청결을 유지하여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시설은 입소자들에 대한 호칭을 존칭을 사용하며 희망과 사회적, 관습적 통념에 의한 호칭을 사용한다.
3. 시설은 입소자가 입소자의 금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관리사용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설은 입소자의 개인비품 및 용품을 스스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증 입소자는 제외한다.
5. 시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
6.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상세히 개별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본인기록에 대하여 보호자에게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보호자 아닌 외부 열람자에게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철저히 하며 열람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노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열람 가능토록 한다.
7.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기

- 적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시설은 사망한 입소자에 대하여 무연고자이거나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의식을 시행한다.

제116조 (치매활동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1. 시설은 문화적 여가생활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입소자가 다양한 취미, 문화생활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및 TV 라디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2. 문화적인 접촉 및 대화서비스를 통한 기초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 치매예방 및 여가프로그램 참여는 어르신 개별특성과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117조 (재활치료 서비스)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프로그램 선택에 따른 필요한 개별적 특수 프로그램(중풍, 치매, 중증입소자) 또는 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공하여 신체기능유지 및 건강악화와 질병재발을 최대한 지연되도록 기능향상에 노력한다.

제7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제11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나)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기록한다.
 -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 또는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 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1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 급 등)를 취한다.
-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

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또는 구급자 지정 위탁업체(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동승)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퇴소조치에 대한 사항

- ①. 병원입원 후 어르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퇴소조치 할 수 있다.

- ②. 퇴소시에는 시설은 연계(퇴소)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제9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12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입소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인 및 직원들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 ①.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 ②.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입소자가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 대책]

- ①. 의료 전문기기와 화기 제품 등은 시설 내 의료인 및 시설관리자외의 취급을 절대 불허한다.
- ②.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침실, 욕실, 화장실 등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입소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2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배상의 의무나 면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4. 시설에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일반화재보험 및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책임보험),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